

유엔 環境開發會議(리우회의) 參加 報告

崔 玖 休 林業研究院
經營部長

1. 머리말

지난 6月3日부터 6月14日까지 브라질 리우 대 자네이로에서 열었던 역사적 地球頂上會議에, 政府代表團에 끼어 參加한 結果를 要約 報告하겠습니다.

本은 리우會議라 하면 各國 政府代表團이 參加했던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와, 民間團體들이 다른 會議場에서 同時에 열었던 地球포럼(Global Forum)을 총칭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UNCED에 參加했던 内容中, 持히 山林分野를 中心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地球頂上會議는 參加者의 地位와 數 등으로 보아 일찌기 歷史上 類例가 없었던 會議였으므로, 그 名稱도 다양해서 正式名稱 말고도 別名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地球上의 모든 國家元首가 모였다해서 地球頂上會議라고도 하며, 뉴욕타임지는 生態學의 브레튼 웃즈會談(2次 大戰後 世界經濟秩序를 잡기 위해 世界指導國代表들이 Bretton Woods에서 열린 會談)이라고도 하며, 지구환경危害商品(主로 工產品)의 貿易規制를 우려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에 빗대어 Green Round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昨年 9月 빠리에서 열었던 第10次 世界林業會議에서, 미테랑 大統領과 UNC ED 事務總長 Maurice F. Strong氏는, UNCED 會議의 實質的 討議內容의 50%가 山林問題라는 點에 비추어 리우會議를 Silva Summit(山林頂上會議) 라 別名을 붙인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리우會議의 目的是 產業革命以後 지나친 經濟開發로 因한 환경파괴로 말미 암아, 人類와 모든 地球生態系가 危機에 처해 있음을 覺醒하고, 環境이 지탱할 수 있는 限度(환경 淨化能力)內에서 經濟開發을 해나가고자 하는 이른바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概念을 實踐해 나가자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地球환경문제는, 약 20여년전 Rome Club이 提唱한 “成長의 限界(Limits to the Growth)”에 이어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열었던 人間환경회의의 20週年을 기념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으며, 热帶林破壞의 先頭格인 브라질에서 갖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1989年에 UN決議로서 리오會議가決定된以來 本會議를 위한 大規模準備會議만도 8 차례 이상 열였습니다.

우선 UNCED준비회의만도 나이로비, 제네바, 뉴욕 等地에서 4 차례 있었고(산림청 이장호 계장, 임업연구원 신준환 박사 참석), 미테랑대통령주재로 작년 빠리에서 NGO(비정부단체) 회의가 열였으며, 先進國 측은 지난 4 월 東京에서 이른바 賢人會議 등 戰略會議가 있었고, 開途國들도 '91년 6月 北京과 '92年 5月 쿠알라룸푸르에서 2 차례에 걸친豫備 作戰會議를 가진바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開途國 環境閣僚會議에는 韓國도 一員으로 參席한바 있습니다. 흔히 UN은 開途國의 定義를 1人當 GNP 4,000弗以下의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環境的인 先後進國 區分은 좀 基準이 다릅니다. 즉 地球環境惡化의 責任의 輕重에 따른 구분인데, 地球上 모든 나라는 통상적인 책임(Common Responsibility)이 고루 있는데 反하여, 先進國은 過去 200~300년의 오랜 產業化過程에서 地球環境을 더많이 더럽혔다하여 통상적 責任外에 이른바 歷史的 責任(Historical Responsibility)이 追加되어 한다하여 差別化된 責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點에서 우리나라라는 지구환경에 대한 歷史的 책임이 없는 나라라는 뜻으로 “環境的 開途國”에 屬하게 되고 開途國 環境閣僚會議의 一員이 된 資格을 갖게 된것입니다.

2. 會議內容

다음으로 저는 UNCED 會議의 性格을 政治, 經濟 및 思想的 側面에서 3 가지로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政治的 性格으로는 環境保全과 經濟開發의 調和(ESSD) 달성을 위한 頂上들의 政治會議라는 點과

둘째, 經濟的 性格으로는 東西冷戰 終熄以後 새 國際秩序 創出을 為한 南北協商의 再開, 다시말하면 北쪽나라 先進國의 資本과 技術, 그리고 南쪽나라 開途國의 環境을 서로 어떻게 有利한 條件으로 交換할것인가 하는 經濟會議의 性格이라는 點. 그리고 세번째 性格으로서는 人類의 自然觀에 對한 一大轉換點이 되는 會議의 性格이라는 點입니다. 다시 말하면 西歐 物質文明을 지탱해온 이른바 自然支配思想이 드디어 限界에 부딪쳐 退潮함과 同時에, 東洋의 自然調和思想이 새로운 世界環境 이데올로기로 浮上하게 된 轉機라는 點에서 저는 리오會議의 思想의 意味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UNCED에 參加한 나라는 모두 178個國이었으며, 이中 114個國은 國家元首 또는 政府首班이 首席代表로 參席했습니다. 그리하여 各國의 政府代表 約 8,000名, 民間團體 約 7,900團體 및 各 言論從事者 約 7,000名, 都合 約 30,000名이 參加한 셈이며, 우리나라라는 國務總理를 首席代表로 한 政府代表團 29名과 民間團體 및 言論人 約 60名을 合하여 90余名이 參加했습니다.

UNCED의 成果를 整理한다면 모두 5個文件을 採擇한 셈인데, 2件의 宣言과 1件의 聲明과 2件의 協約이 그것입니다.

먼저 2件의 宣言은 이른바 리우宣言과 議題 21이며, 리우宣言이란 前文27條로 엮어진 것으로서 地球環境保全의 基本理念인 ESSD의 宣言的 規範을 담고 있습니다. 當初에는 그 名稱을 地球憲章(Earth Charter)

先·後進國間立場差 커

- 先進國 : ○山林保全에 치중
○開途國의 山林 훼손이 커
後進國 : ○산림개발이 유일한 생
계수단, 구속반대
○선진국의 소비패턴이
산림파괴의 더 큰 원인

으로 하려 하였으나 開途國들의 反對로 단순히 리우宣言이란 表現으로 弱化됐습니다. 다음宣言은 議題 21인데 이는 前文 38章 1,434條로 된 방대한 文件으로 리우宣言에 대한 各國의 實踐綱領이라 하겠습니다. 그內容인 즉 地球環境問題의 原因이 各種 社會, 經濟的 要因들에 대한 解決方案, 大氣, 海洋, 폐기물, 山林, 土地 등 각 환경사안에 대한 解決方案, 이를 위한 社會各層의 役割과 法制度, 技術移轉 및 財政支援等 廣範圍하고 包括的인 技術體系를 規程하고 있습니다. 技術移轉分野에서는 公共技術의 無償協助이고 民間技術은 外形上 商業Base 移轉이나 ODA(UN 公的 開發協助) 支援에 의한 移轉이므로 開途國은 無償協助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특히 技術移轉에 先進資本이 反對할 境遇에 對應하기 이른바 強制實施權을 追加한바 있습니다.

財政分野를 살펴본다면, 議題 21을 實行하기 위해서는 年間 約 6,000億弗 정도의 費用이 所要되며, 그 大部分은 事業을 實行하는 開途國에서 負擔하게 될 것이며 先進國은 ODA등을 통하여 支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ODA를 통해 支援하고 있는 資金規模은 年間 約 550億弗로서 先進國 GNP의 0.35% 정도이나 開途國立場에서는 先進國外債에 對한 1年間의 利子水準도 못되는 수準이라는 不平들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이 (New) 充分한(Adequate) 追加(Additional) 支援을 要請한데 對하여, 當初에는 2000年까지 先進國 GNP의 0.7%에 該當하는 年間 1,250億弗을 約束할 듯 하였으나 最終段階에 가서 “充分한(Adequate)”이란 말과 “2000年까지”란 말을 빼고 “可能한 한 빨리” GNP의 0.7%水準을 支援한다고만 表現함으로서 開途國들의 失望을 사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氣候變化協約은, 過去 200-300年間 產業革命 以後 化石燃料使用量이 늘어남에 따라 二酸化炭素가 約 25% (280 ppm→350ppm)로 增加되어 이른바 온실효과로 말미암아 氣溫이 上昇되고, 이러한 추세가 繼續될 境遇 2030년에는 氣溫이 4℃ 정도 올라가서 極冰을 녹임으로써 海水面이 1m 정도 올라오는 등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므로, 各國은 二酸化炭素排出을 억제하기 시작하여 2000年까지 1990年 水準에 이르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美國을 為始한 工業國家와 產油國들의 反對로, 原則은 좋으나 “2000年까지”라는 時限目標를 摘除함으로서, 다소 느슨해진 結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 氣候變化協約에 暑名한 나라들은 (韓國은 現地에서 152번째로 暑名) 每年 二酸化炭素排出量과 山林의 二酸化炭素吸收量은 UN에 報告해야 하며, (韓國은 1990年 基準 炭素輩出量 約 65百萬ton, 吸收量 12百萬ton)이 兩者의 統計를 基準으로 그나라의 工業分野를 規制하게 된다면, 그 結果는 바로 그나

라의 山林(環境)이 工業(開發)을 規制하게 된다는 뜻이 되며, 從前의 開發이 環境을 規制하던 哲學과는 正反對가 되는 思考의 轉換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生物多樣性協約은 地球上에 存在하는 生物種(現在 알려진 것만도 約 140 萬種, 이中 約 60%가 热帶林에 存在)이 生命工學의 發達로 人類의 未來를 위해 無限한 可能性을 지닌 分野임에도 热帶林破壞 등으로 每年 約 5萬種씩 減種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를 保存하자는 協約입니다. 特히 從來에는 生物種을 外國資本이 자유로이 接近(利用)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協約이 締結됨으로써 生物資源保有國의 主權이 認定됨에 따라, 當事國의 雙務協定에 따라 一定한 로얄티를 支拂하게 되고, 事後에까지도 이로 因하여 어떤 特許物質이 開發된 境遇, 그로 因한 利益을 서로 分配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습니다. 이 協約에도 150여 개 나라가 現地에서 暑名(韓國은 154번째로 暑名國)했음에도, 美國 부시대통령은 國益保護를 理由로 暑名을 拒否함으로서 많은 勿議를 일으켰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3. 山林分野 討議

實務會議는 8個分科로 나뉘어 進行되었지만, 그중에서도 山林原則 會議가 始終議題 第1號였고 會議場이나 會議時間配定도 最優先이었습니다. 다른 分野는 議長選出도 첫번會議에서 끝났습니다라는 山林原則 會議 議長은 先後進國의 대립으로 이를만에 合意를 보았는데, 山林原則을 基礎한 것으로 알려졌던 Liburd대사(가이아나)가 選出되었습니다. 山林原則宣言은 원래 美國

등 先進國側으로서는 山林議定書(Forest protocol)形態로 法的拘束力 있는 協約으로 接近할 생각이였습니다마는 開途國들의 反對로 因하여, 1段階로 法的拘束力 없는 山林原則宣言으로 合議를 誘導하고, 第2段階로 法的拘束力 있는 山林議定書를 만들기로 바꾸게 된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만들어질 山林議定書가 世界山林法이라면 이번에 만든 山林原則聲明은 世界山林憲章 또는 憲法의 地位에 있는 規範이라 할만합니다. 그러므로 그 形式에 있어서 法的拘束力 有無가 問題시된다 하더라도 그 實質에 있어서는 法規範이나 마찬가지라고 各國 政府代表들이 진지하게 討議에 임하였으며, 各國은 이 原則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形태로든지 그에 상응하는 國際的 不利益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믿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山林原則의 討議內容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整理하고 넘어갈 것은, 山林分野가 왜 이번 地球頂上會議의 中心議題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가 하는 點입니다. 저는 이 點을 세가지 시점에서 그 理由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技術的 理由이고, 둘째는 歷史的 理由이며, 셋째는 政治的 理由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技術的 理由란 山林環境이 人間의 肉體的, 精神的, 文化的, 經濟的, 社會的, 宗教的, 生活領域에 걸쳐 包括的인 環境技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特히 CO₂를 吸收하고 O₂를 排出하며 炭素를 固定시키는 技能을 遂行함으로서 工業分野가 더럽혀 좋은 大氣를 根源的으로 淨化시키는 작용을 하며, 生物多樣性만 하더라도 그 60%를 热帶林 등에 保有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山林은 陸地의 1/3을 占하고 있는 巨大한 地球環境淨化施設로서 大氣中의 炭素(約 7,000億ton)와 山林에 固定되어 있는 炭素量이 비슷하여 가령 大氣中炭素가 25% 늘어나는 것을 山林을 25% 增加시킴으로서 均衡的對應이 可能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開途國의 現地 狀況을 살핀다면, 地球環境問題의 主犯은 人口와 貧困이라 할 수 있을 만큼 貧困과 環境破壞는 惡循環을 거듭하고 있는 樣相이므로 貧困問題 解決책에는 地球環境을 改善하기 어려운 狀況입니다. 그런데 林業分野만이, 그 自體内에서 環境保全과 經濟開發이 調和的으로 達成可能한 分野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歷史的 理由란 이른바 地球環境破壞의 歷史的 責任(Historical Responsibility)의 출발점이 產業革命 초기 英國의 大大的인 山林破壞에서 비롯되어 다른 나라로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約 300年前인 1695年 英國의 鐵鋼生產量은 總 18萬 ton이었는데, 당시는 木으로 製鐵을 했으므로 年間 約 270萬 m³의 (鐵 1 ton 生產에 木材 約 15m³ 所要) 木材를 伐採했고, 이로 因하여 3 - 5 萬ha의 山林이破壞된 자리에는 牧場을 만들어 綿羊을 길러 毛織物을 生產함으로서 產業革命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말하자면 林業(環境)의 犠牲 위에 農業과 工業(開發)을 일으켜 이른바 GNP를 成長시킴으로서 產業革命은 英國의 經濟力を 낳았고, 이를 바탕으로 世界支配力を涵養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山林破壞作業은 2次大戰前까지繼續되어 山林은 英國 國土面積의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후 近視眼의인 自然破

壞로 말미암아 人間生活에 미치는 多樣하고 廣範圍한 惡영향을 깨달음은 물론 經濟成長에도 限界가 있음을 깨닫고 大戰以後 줄기차게 山林 늘리기 運動을 벌여온 結果 오늘날 거의 배로 늘어나 英國 山林은 國土의 約 10%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英國과는 程度의 差가 있을뿐 다른 西歐 여러나라도 山林을 破壞해온 歷史的 狀況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선진국들은 국토의 20-30% 정도만이 山林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후 石炭과 石油 등 化石燃料의 開發로 탄산가스增加 등이 기후변화의 原因이 되었고, 白堊紀(약 220百萬年前 - 65百萬年前)를 通하여 地球를支配했던 恐龍이 갑자기 滅種됐던 原因이 氣候變化였을 것이라는 學說이 연상되어, 人間이 第2의 恐龍의 運命이 될지 모른다는 危機意識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世界山林의 約 70%를 갖고 있는 開途國 特히 热帶山林國의 同參없이는 地球環境改善 努力의 限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山林資源 保存問題가 汎地球問題로 부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開途國들의 先進國에 대한 歷史的 責任 攻勢에 몰려, 결국 先進國들은 이를 認定하기에 이르렀고, 歷史的 責任에 상응하는 世界綠化運動 등 地球環境改善 노력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山林分野가 地球頂上會議의 中心議題가 된 政治的 理由를 整理해 보면 이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地球頂上會議가 어차피 南北間에 環境과 開發을 주고 받는 性格의 會議이므로 서로가 이 交換에서 媒體가 必要하고, 『구실』이 있어야 합니다. 南粵(開途國) 사람들은 山林에 依存해 살고

있으므로開發의 첨경은 山林分野일 수 밖에 없고, 北粵(先進國) 사람들에게 資本과 技術을 내 놓으라고 주장하는 구실 또한 山林破壞와 관련된 歷史的責任이며, 热帶林產物 交易條件에 있어서도, 開途國의 脆弱한 市場接近力を 惡用하여 不平等交易을 함으로써 이론바 先進國에로의 資源의 純移轉(Net transfer Resources)을 해온 결과, 先進國은 잘살게 된 반면, 開途國은 外債와 貧困의 累積, 持續可能한 山林經營能力의 상실등으로 貧困과 環境破壞의 惡循環만을 거듭해 왔다는 주장입니다. 先進國은 先進國대로 開途國을 도와줄 명분과 구실을 山林 즉 環境保全에서 求하고, 財政 및 技術의 支援을 通하여, 開途國을 위한 開發支援과 先進國을 위한 環境利得을 同時に 도모하는 구실로 山林分野를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山林分野가 先·後進國間에

環境과 開發問題를 仲介하는 매체요 共通分母가 되고 있다는 點에서 政治的 理由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4. 山林原則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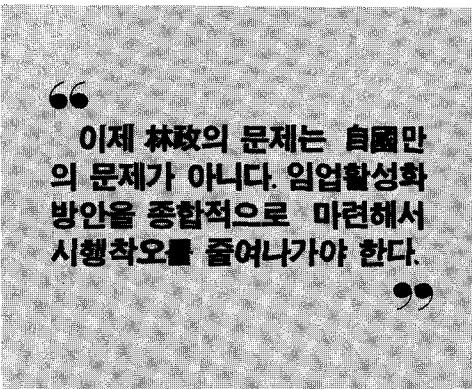
이 原則의 正式 英語名稱은 아주 긴 것이어서 簡게 줄인다 해도 『全世界 山林의 經營, 保全, 持續的 開發에 대한 諸原則 聲明』이 됩니다. 원래 先進國들은 法的拘束力이 있는 山林議定書나 山林協約으로 發展시켜 開途國의 山林을 保全하려 했으나, 開途國의 反對에 부딪쳐, 山林原則聲明으로 하되, 2段階로 山林議定書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네차례의 UNCED 준비회의와 리오 본회의를 通하여, 山林原則聲明에 對한 先·後進國間의 主要立場差를 整理해 보면 다음 表와 같습니다.

先進國	後進國
I. 山林原則 聲明後 山林協約 縮結	I. 山林原則으로 足하며 山林協約 反對
II. 山林保全에 置重, 各國의 山林保存 義務 強調	II. 山林開發이 唯一한 生計手段으로 拘束反對
III. 開途國 非持續的 生產 패턴이 山林 毀損의 原因(開途國 責任)	III. 先進國의 消費 패턴이 山林破壞의 더 큰 原因
IV. 非持續的 生產 林產物 貿易規制	IV. 林產物 自由 貿易保障, 關稅撤廢
V. 生物資源 自由로운 接近과 商業베이스 技術移轉	V. 生物資源 主權認定, 技術無償 移轉 生命工學製品 利益 均占
VI. 報償의 性格의 財政支援困難	VI. 不平等한 林產物 交易→外債累積→貧困→山林破壞의 惡순환 : 당연히 無償援助
VII. 山林의 炭素 貯蓄庫 機能(地球溫暖化 防止機能) 公認	VII. 山林의 炭素 貯蓄機能 明示 反對 明示하면 環境에 둑여 開發制限 우려

다음으로 山林原則 聲明 43項目中 重要 한 項目 14개를 골라 說明을 붙여볼까 합니다.

1) 山林原則 前文

먼저 山林原則 前文은 모두 8個項目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內容in즉 먼저 이 原則이 世界的 合意文書임을 強調하고, 그 適用範圍가 天然·人工林이나 地域과 氣候帶



를 莫論하고 世界全山林에 걸친다는 點과, 이 原則을 遵守할 責任은 各國의 憲法과 法律에 따라 山林에 權限있는 政府에게 있음을 強調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의 經濟적·環境的 機能이 廣範圍해서 모든 環境과 開發分野와 關聯되어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2) 山林原則 第1條 a項(開發主權 責任原則)

各國은 유엔憲章과 國際法 및 環境政策에 따라 資源開發主權을 認定하되, 그로 인하여 各國의 環境에 惡영향을 끼쳐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3) 山林原則 第2條 b項(後代環境 責任原則)

山林資源은 當代뿐 아니라 後代 사람들의 社會經濟的, 生態的 및 文化·情神的 所要를 充足할 수 있도록 持續的으로 經營되어야 한다는 點을 強調한 條項입니다.

4) 山林原則 第3條 a項(林政強化原則)

國家政策은 山林의 經營, 保全 및 持續的 開發을 위하여 計劃과 制度를 한층 強化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山林原則 第8條 a項(世界綠化 및 先進國 優先 責任原則)

山地綠化 推進 運動에 모두 同參해야 하며, 特히 歷史的 責任이 있는 先進國은 山林保全과 造林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原則입니다.

6) 山林原則 第8條 b項(山林凍結 또는 擴大原則)

이 條項은 각 나라는 山林面積과 林業生產力を 적어도 現狀維持하거나 더 늘려 나가되 줄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山林이 減少하고 있는 開途國을 겨냥한 條文입니다.

우리나라의 境遇도 先進國隊列에 끼일 수 있으려면 더 이상의 山林減少를 포기하고 오히려 다소라도 山林이 外形的으로 늘어남은 물론 内面的 充實을 通하여 林業生產力이 增加될 수 있는 努力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7) 山林原則 第8條 d項(山林經營 二重基準原則)

이 條項은 앞으로 世界 모든 山林經營을 어떤 基準下에서 끌고 가느냐 하는 매우 重大한 條文이며, 國內基準과 國際基準에 共히 부합되도록 經營해야 한다는 原則입니다.

8) 山林原則 第8條 g項(生物資源 主權尊重 및 利益均占原則)

이 原則은 生物多樣性協約과도 不可分의關係에 있는 條項입니다마는, 生物遺傳資源에 대한 從來의 自由接近이 否認되고, 資源保有國의 主權이 尊重되므로 事前 許可나로 알티 支拂을 前提로 接近이 許容될 展望이며, 接近 後에도 이로 因한 特許製品 등으로 獨占利潤이 發生할 경우 資源國과의 雙務協定에 따라 그 利益을 分配한다는 原則입니다.

9) 山林原則 第9條 a項(先進國의 林業支援 責任原則)

開途國의 山林資源을 經營, 保全, 持續開發함에 있어서 國際社會 特히 先進國의 支援責任이 있는바, 이는 過去開途國의 市場接近이 어려운 동안 不公正한 林產物 去來로 因하여 開途國의 外債·貧困의 累積 및 山林資源更新 余力의 不足 때문입니다. 市場經濟體制로 轉換中인 東歐諸國의 林產物 市場接近에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는 内容입니다.

10) 山林原則 第11條(技術移轉 및 支援原則)

開途國의 山林資源을 持續經營할 수 있도록 健全한 環境技術은 實質的으로 無償 移轉하고 財政支援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原則입니다.

11) 山林原則 第13條 b項(林產物 現地加工 및 關稅輕減原則)

林產物 生產國의 持續經營을 돋기 위하여 高附加價值 林產物의 國內加工과 市場接近 그리고 關稅를 徹廢하거나 輕減시키는 措置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合板 등 加工林產物의 關稅가 15%, 原木이 2%인 점과 外材依存度가 높은 立場에서 매우 민감한 條項이 아닐수 없습니다.

12) 山林原則 第13條 c項(山林環境技能 内部化原則)

山林保全과 持續開發을 위해서는 山林이 創出하는 모든 環境費用과 便益이 市場에 反映되도록 國內外의으로 권장해야 한다는 原則으로서 林業의 特性에 비추어 매우 意味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많은 研究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3) 山林原則 第13條 e項(山林政策 優先原則)

나라의 모든 政策은 山林荒廢를 招來하는

내容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되며, 山林을 保全, 持續經營을 目的으로 하는 政策과 資源誘因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條項으로서 第8條 b項과 맥을 같이하는 内容이면서도 山林政策 뿐 아니라 國家의 다른 政策分野에 대한 山林優先原則을 規定한 内容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 山林原則 第15條(山林污染物質 規制原則)

山林生態系에 해로운 汚染物質 特히 酸性沈澱物 등 待機污染 物質은 國內는 물론 地域의(國境近方)이나 世界的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히 規制되어야 한다는 原則으로서, 山林原則 第1條 a項과 맥을 같이 하는 條文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中國大陸으로부터 날아오는 黃砂와 酸性物質에 대하여 그 防止措置를 要求할 수 있는 根據가 마련된 셈입니다.

以上 山林原則 合意結果를 살피건데, 우리나라로서는 대체로 바람직스러운 방향이거나, 會議 분위기에 비추어 不利益을 最少化하는 線에서 마무리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政府代表團이 關心을 가지고 會議進行 狀況을 注視하면서 積極的으로 主張하고 反映시킨 點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山林原則 第8條 d項 山林經營의 國際基準을 追加하는 問題에서 先後進國間의 장시간 교착상태를 끝고 調整案을 提示하여 採擇되었고,

둘째, 山林原則 第13條 b項에서 林產物 關稅를 徹廢하자는 生產國側 主張에 맞서 減縮시키도록 완화시켰으며, 셋째로는 山林原則 第15條 汚染物質規除 條項에 있어서 中國代表團의 強力한 反對가 있었으나 地域(國境地帶)間의 規制 文句를 包含시킴

으로써 앞으로 中國大陸으로부터 날아드는 黃砂現象이나 酸性雨 등 環境汚染問題를 地域間 問題로 부각시킬 수 있는 根據를 마련 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議題 21 등 持術移轉 討議에서도 開途國側의一方的인 無償移轉 主張과 先進國의 商業베이스 移轉方案을 절충하여 公共技術(무상)과 民間技術로(ODA支援 商業베이스) 나뉘어 移轉 代案을 提示 採擇하게 된것도 我國의 中立의인 調整役의 例라고 하겠습니다.

5. 會議參加 所感

이번 會議에서 새삼스라이 느껴졌던 점은, 모든나라 代表들이 진지하고 열성있는 討論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宣言이나 協約에 關係 없이 그러했습니다. 특히 條文마다 利害가 다른 178個國 代表들 수천명이 10여일을 계속 討論하는데 多數決原則에 의해서 議事를 進行하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도 反對한 나라가 있으면 原點에서 다시 討論을 반복하여 滿場一致에 이르러야 議事棒을 두들기는 인내와 끈기의 國際會議의 分위기에, 한편 지루하고 짜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감탄스럽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느낀 所感은 명색이 地球環境問題를 논하려 온 頂上들의 모습이, 小我的 인 自國利益에 억매어 人類全體의 環境問題를 생각하기에는 限界가 있다는 생각이였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美國의 부시大統領의 경우라 하겠습니다마는, 그는 150여개국 代表들이 現地에서 즉석 暑名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生物多樣性協約 서약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나는 美國大統領이지 世界大統領은 아니다”라고 말

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美國이 超強大國으로서 지금까지 實質적으로 世界大統領의 役割을 擔當 해온것이 사실임에도 大統領 選舉을 의식했음인지 美國內의 生命工學產業界의 權益保護를 위해서 단호이 暑名을 拒否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利己主義的 思考는 國家單位에서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歸國後에 展開되고 있는 國內분위기도 다른바 없이 集團利己主義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國内外에 불어닥친 環境의 물결속에서, 環境問題의 本質을 짚고 그 根源의in 解決方案을 마련하려하기에 앞서, 오히려 自己部處의 權限伸張이나 關聯產業體들의 利害關係에만 지나치게 민감한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大義를 쟁버리고 問題의 核心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環境問題의 本質과 그 解決의 실마리는 大自然을 다루는 問題, 大自然의 大宗인 山林資源을 가꾸는 問題로 귀착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全國林業人들은, 아니 世界林業人들은, 山林分野의 正體性(Identity)을 再認識하고, 우리의 天職은 山林을 가꾸는데 一路邁進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곧 우리 스스로가 사는 길이요, 人類가 살아남을 것이며, 35億年間 地球上에 살아온 온갖 生命體를 길이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林業人們의 役割이 이렇게 所重하게 돋보였을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바야흐로 때는 林業人们的 時代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 今後 林業人們의 課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2년 6월은全世界林業人들에게 있어서特別한意味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우리의努力은環境分野와關聯하여傳統林學의 새領域을개척하는 일이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은 비단自然科學分野뿐만 아니라, 社會科學領域까지도, 특히國際政治領域까지包含되지 않고서는現實問題를 다루어 갈 수 없는狀況입니다. 그리하여山林, 林業, 林學分野의位相을 한층드높이는 계기로 승화시켜야 할 줄 압니다. 環境問題를政府에만맡겨둘 형편이 아닙니다. 廣範圍한民間團體들을通하여 더욱效果의인環境改善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環境이데올로기가 보편성을 지니려면,

그思想的背景이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우리의傳統의自然調和思想이야말로未來社會의自然觀으로서世界人類 앞에내놓을만한빛나는文化遺產이라 믿어의심치 않으며, 이를보다체계화하고다듬는작업을서둘러야 할 줄압니다.

世界環境問題의出發은治山治水를소홀히한所致라생각되며, 治山治水가政治의要體라는政治文化를世界에輸出함직도합니다. UN이公認한바와같이, 2次大戰後國土綠化에完全成功한나라는大韓民國뿐이라합니다마는그동안터득한기술과경험그리고새마을精神을世界綠化運動에앞장섬으로서國威를떨칠때가지금이라고확신합니다.

원목반출 극인타기제 일부 완화

독립가에겐 생산확인표로 대체 검토

산림청은 그동안 벌채지에서의 원목을반출하기전 생산량 확인과 부정 임산물의반출을방지하기위하여시행하여왔던원목에의극인타기(極印打記)제를독립가에한하여일부완화할것을검토하고있다.

그동안의극인찍기제도는생산비의증가와많은민원을유발하는대상이되어왔고, 시대적으로부정임산물도거의없다싶이된추세임을감안, 본회에서독립가에 대하여는자체극인을제작, 관할시·군에등록하여놓고필요시마다인출하여사용

할수있도록제도개선을요구하여왔다. 그러나이는산림법의개정을전제로하기때문에우선전단계조치로손쉬운산림법시행규칙만을개정하여“생산확인표”로대체하는방안을강구중인것으로알려졌다.

이제도가시행되면독립가는종전의극인타기신청을하는대신, 생산확인표를교부받아자체적으로생산확인표를부착, 반출하게됨으로써시간의절약과생산비를훨씬절감하게되고따라서민원도많이해소될것으로기대된다.